

## 소 취 하 서

사 건 2018가합2078 손해배상(기)  
2019가합680(병합), 2019가합697(병합), 2019가합703(병합),  
2019가합710(병합), 2019가합727(병합), 2019가합734(병합)  
원 고 김 성 훈 외 63766  
피 고 애플인코퍼레이티드 외 1

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 \_\_\_\_\_은(는)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.

첨부 : 인감증명서 1부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2019. \_\_\_\_ . \_\_\_\_ .

원 고 \_\_\_\_\_ (인감도장날인)

전화번호 \_\_\_\_\_ - \_\_\_\_\_ - \_\_\_\_\_

서울중앙지방법원 제 31 민사부 귀중